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노인돌봄 서비스가 공적 영역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확대되어, 국가와 사회의 돌봄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
- 노인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과 서비스 질 문제제기
- 노인돌봄 인력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만들어짐.
- 서울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87%가 요양보호사임.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돌봄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함.
- 2012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 권고’를 결정함.
-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요양보호사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요양보호사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음.
- 요양서비스 공급체계 및 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의 운영실태와 정책대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지자체가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을 실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2

연구 방법

- 설문조사
- 서울시 126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총 782명의 유효 설문 회수(재가 347부(44.4%), 시설 435부(55.6%))
- 초점집단면접(FGI : Focus Group Interview)
- 요양보호사 총 18명(시설 9명, 재가9명)을 대상으로 FGI 2회 실시
- 심층면접조사
- 관리자 총 11명(시설 5명, 재가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총 9회 실시

연구의 주요 내용

2.1 서울시 장기요양보험사업 현황

- 장기요양기관 현황
 - 서울에는 2013년 3월 현재 장기요양기관이 2,273개임. 이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800개(79.2%), 시설장기요양기관이 473개(20.8%)임.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부터 초기 2년 동안 크게 증가하다 2011년부터 증가세가 감소하는 추세임.
- 설립주체별 기관 현황
 - 장기요양기관 설립주체는 개인 사업자가 76.2%로 가장 많으며, 이어 비영리법인이 13.4%, 주식회사가 5.6%, 지자체가 4.4%임.
 - 영리사업자(개인+주식회사)가 81.8%,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지자체)가 17.8%로 나타나 영리 목적의 장기요양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음.
- 종사자 현황
 - 서울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총 종사자 수는 약 6만 5천명임. 전체 종사자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약 5만 8천명으로 총 종사자의 86.9%를 차지하고 있음.

2.2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조사 결과

- 요양보호사의 고용조건
 -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부적절한 임금이나 연차사용의 제한 등이 발생함.
 - 시설 요양보호사는 야간을 포함한 교대제로 인한 장시간의 높은 노동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을 제대로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 재가 요양보호사는 고용불안의 문제가 심각함.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언제 일이 종료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나 8시간 근무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기타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경우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이용시간을 줄이는 편법을 쓰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용자와 기관과의 관계
 - 요양보호사들은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용자나 보호자의 과도한 요구나 폭행에 대해 기관의 별도 조정이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요양기관이 자기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므로, 요양보호사가 공단이나 지자체에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함.
- 균골격계 질환과 감정노동의 어려움
 - 균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증가함에 따라 바우처 등을 통해 균골격계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 이들을 위한 상담이나 힐링캠프 등에 대한 요구도 나옴. 요양보호사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요양보호사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상시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함.
- 쳐우개선비
 - 쳐우개선비 도입 후 기본급을 내려 이전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신입직원은 쳐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초봉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음. 재가는 수가에 포함되어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쳐우개선비 인상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
 - 요양보호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일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하는 것이 비일비재함.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기관 운영에서의 문제
 - 기관 운영의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 체납으로 인해 기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재가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기관이 있어 공급시장이 왜곡되고 있음. 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이용자 확보의 어려움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궁극적으로 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관 유형별 요양보호사 고용조건에서의 차이
 - 영리목적의 기관과 비영리목적의 기관은 여러 노동조건에서 차이가 존재함.
 - 임금 등의 근로조건, 다른 시설과의 연계, 요양보호사 관리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지자체 위탁기관과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 개인운영 기관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을 제공

하고 있음.

2.3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적 권한과 역할

- 연구진은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과제를 도출함. 서비스 공급체계, 노동조건 향상, 직무향상교육, 관리감독 역할, 시민의식 향상 등의 영역에서 지자체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살펴봄.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함.
- 직접 설치, 운영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도 보조금이 지급돼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히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해야 함.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영업정지, 폐쇄 명령을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각 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하달할 수 있음.
-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 현황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감독하여야 함.
- 실질적인 처우개선 효과를 위해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고용정책 기본법 및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상담, 일자리 소개, 건강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3.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3.1 정책의 기본 방향

- 서울시는 서비스의 공급 방식과 관련하여 민간에 전적으로 위탁할 것이 아니라 시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해야 함. 더불어 영리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할 수 없는 공익적 역할을 대신할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탈법, 불법행위 방지. 요양보호사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요양보호사가 괜찮은 일자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질 관리를 해야 함.

- 요양보호사의 부족한 임금 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금전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수준, 청렴도,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안정성 등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3.2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

- 요양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비영리법인이 증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 개정이 요구됨.
 - 공공요양기관의 적극 확대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 수가 현실화 및 차등지급
 - 실질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의 현실화가 필요함.
 - 서비스 제공량 외에도 서비스의 질 관리 정도나 안정성 등에 따라 수가 차등지급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인력배치 기준 등 운영 기준 강화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는 총인원 기준보다 1일 8시간 교대제 기준의 인력기준이 수립 돼야 함.
 - 근속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호봉제가 의무적용돼야 함.
- 처우개선비 실질화
 - 실질적인 처우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처우개선비 지급방식 변경이 필요함. 처우개선비를 요양기관이 지급하는 임금성 수당이 아닌 건보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본인부담금 비율 완화 및 납부 방식 개선
 -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비율을 완화해야 함. 또한 본인부담금 체납은 기관 운영에 재정압박이 되기도 하므로, 건보공단이 본인부담금을 대신 수납하고, 수가와 함께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3.3 지자체 차원의 개선 과제

3.3.1 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 시립·구립 요양기관 확대
- 2013년 현재 장기요양시설 473개 중 지자체 위탁시설이 29개(6.1%)에 불과함. 시립·구립 요양시설을 향후 3년 내에 10%(18개 추가 설립), 5년 내에 15%(24개 추가 설립) 수준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함.
- 지자체 직접운영모델 수립
-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 서비스 제공의 중심축이 되어야 함.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 운영 방식이나 민간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의한 운영방식으로 서비스전달체계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함.
- 요양·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연계 강화
-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나, 시립 또는 구립의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이나, 요양기관이 입소시설,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요양서비스 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져야 함.
-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지정 및 지원
- 영리·비영리 민간 요양기관에 대해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서울형 노인요양시설로 지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함. 양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이 세분화돼야 함.

3.3.2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 방안

- 최저 운영기준 지침화 및 미준수 기관 퇴출
- 요양기관 운영기준 및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요양기관에게 준수할 것을 지침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의 적용을 활성화하여 운영기준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퇴출 시스템을 통해 규제해야 함.
- 옴부즈맨제도 등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 저임금 해소를 위한 처우개선 수당 지급
- 기존 요양보험 수가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와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요양보호

- 사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추진할 수 있음.
- 교대제 개선 지원금
 - 지자체는 교대제 개선 지원금 지급을 통해 8시간 교대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추가 인력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장시간 노동도 근절시키고 서비스 질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지원금의 대상기관 선정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와 교대제 개선 계획을 토대로 이뤄져야 함.
 - 직무교육 지원
 - 영리법인과 개인운영 요양기관은 교육기회 자체가 부족함. 교육시간을 확보하는 문제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대안도 필요함.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강사단을 보유하고, 기관별로 선택 가능한 방식도 효율적임.

3.3.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설립

- 서울특별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법률 지원, 업무 매뉴얼 및 임금가이드라인 개발, 건강검진 및 재활치료 지원, 교육사업,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사업 등임.
- 2013년 11월 개소한 서울시 노인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권역별, 자치구별로 확충해 나가야 함.